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범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65

발의연월일: 2024. 6. 27.

발 의 자:서범수・박정하・성일종

백종헌 • 이헌승 • 고동진

이달희 • 유용원 • 김장겸

김위상 · 김대식 · 천하람

박성민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근로자가 출산한 경우 90일의 출산휴가를 허용하되 그 중 60일을 유급으로 하고, 동시에 2명을 출산한 경우에는 각각 120일의 출산휴가와 75일의 유급휴가를 인정하고 있음.

그러나 2024년 1분기 기준 합계출산율이 0.76명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 기조가 심화됨에 따라 출산·보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적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(유산·사산 휴가 포함) 유급기간을 현행 60일(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)에서 90일(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)로 연장함으로써, 근로자의 회복과 자녀에 대한 돌봄수요 확보에 기여하고 자 하는 것임(안 제74조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서범수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072호), 「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073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

법률 제 호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4조제4항 본문 중 "60일"을 "90일"로, "75일"을 "120일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출산전후휴가의 유급기간에 관한 적용례) 제7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용하는 출산전후휴가 기간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74조(임산부의 보호) ① ~ ③	제74조(임산부의 보호) ① ~ ③		
(생 략)	(현행과 같음)		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	4		
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<u>60일</u>	<u>90일</u>		
(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			
한 경우에는 <u>75일</u>)은 유급으로	<u>120일</u>		
한다. 다만, 「남녀고용평등과	,		
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			
률」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			
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			
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			
책임을 면한다.			
⑤ ~ ⑩ (생 략)	⑤ ~ ⑩ (현행과 같음)		